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나305920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2604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시형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C 주식회사와 원고, 피고 등은 2016. 9. 27.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제48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2016. 9. 27.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약정금 3억 원 및 2016. 9. 27.자 차용금 1억 원 합계 4억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제2조 변제기한 : 2017. 5. 30.

제3조 이자는 1억 원에 대하여 연 25%의 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기로 한다.

제5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치제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등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이자금 및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 (연대보증)

2. 보증인 등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각 2억 원이다.

(이하 생략)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 원고 및 E

나.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F 임야 32㎡, G 임야 159㎡, H 임야 17㎡, I 임야 29㎡ 등에 관하여

2014. 11. 6. 채권최고액 7천만 원,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 날인 2016. 9. 28.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9.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8. 5. 30.

38,349,370원(위 부동산 중 G임야 및 H임야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 2019. 11. 13.

5,309,097원(위 부동산 중 F 임야 및 I 임야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L)을 각 배당받았다.

라. 한편,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소유의 경주시 N 임야 8692㎡ 등에 관하여 2018.

1. 26.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었는데, 2020. 4.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P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변제확인서가 작성되어(다만 위 금원의 영수 및 확인은 대리인 Q이 하였다) M에게

교부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M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합67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금원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타채11366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2020. 4. 10.

M로부터 2억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8, 9호증, 갑 제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의 남편 Q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Q의 요구로 ‘O의 Q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중 대위변제 약정금 3억 원에 대하여는 당시 원고가 경주시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자

없이 원금 3억 원만 지급하고,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하기로 하였으며,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후 경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고(또는 2020. 4. 10. 0가 원금 3억 원과 이자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하였다), 차용금 1억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7천만 원 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인 부동산 중 7필지가 수용되면서 공탁자가 2017. 5. 15. 합계 415,12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할 8,825만 원¹⁾이 포함되어 변제공탁되었으므로 이로서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3천만 원 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 중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신청을 하여 합계 43,658,467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로서 소멸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억 원을 추심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바, 보증인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차용금 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회사는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과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3억 원은 모두 그 기한이 도래하였고(이 사건 공정증서 제6조에서 “위 차용금 등 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위 합계금 4억 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소외 회사는 2016. 11. 1.을 기준으로 원리금 402,328,767원[= 원금 4억 원 + 1억 원에 대한 2016. 9. 28.부터 2016. 10.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328,767원(= 1억 원 x 0.25 x 34일/36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중 보증한도 2억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 및 차용금 1억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경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 공탁금 관련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로 합계 415,128,000원이 공탁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7필지에 대한 공탁금은 합계 8,825만 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14필지가 수용되어 공탁자 주식회사 Y이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로 415,128,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탁금은 2017. 6. 28. 소외 Z, AA, AB이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가 위 공탁금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공탁금 중 8,825만 원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배당금

① 2018. 5. 30. 38,349,370원

위 돈을 2016. 10. 31.까지 기발생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2,328,767원 및 2016. 11. 1.부터 2018. 5. 30.까지 원금 4억 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7,808,219원[= 4억 원 x 0.25 x (1년 + 211일/365일)]에 우선 총당하면 2018. 5. 30. 기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121,787,616원이 남게 된다.

② 2019. 11. 13. 5,309,097원

위 돈을 위 ①항 기재 남은 이자 등에 우선 총당하면 2019. 11. 13. 기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262,231,943원[= 기발생 이자등 116,478,519원(= 121,787,616원 - 5,309,097원) + 원금 4억 원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11. 13.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5,753,424원{= 4억 원 x 0.25 x (1년 + 167일/365일)}]이 남게 된다.

다) 그렇다면 2020. 4. 10. 기준 원리금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303,053,860원[= 위 ②항 기재 기발생 이자 등 262,231,943원 + 2019. 11. 14.부터 2020. 4. 10.까지 4억 원에 대한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0,821,917원(= 4억 원 x 0.25 x 149일/365일)] 합계 703,053,860원이 되고, 피고가 2020. 4. 10. “소외 주식회사 M 소유의 경주시 N 임야 8,692㎡ 등에 관하여 2018. 1. 26. 경료된 채무자 O,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변제받은 돈 350,0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원금이 2억 원 이상 남아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억 원을 추심한 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1) 경주시 R, S, T, U, V, W, X에 관한 공탁금액의 합계금이다.